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36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이인선 · 배준영 · 박충권
고동진 · 이달희 · 김성원
조지연 · 서지영 · 김석기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전환·운영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또는 전력비, 유지보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과 운영비의 100분의 7(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전환·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전환·운영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또는 전력비, 유지보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과 운영비의 100분의 7(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